

[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약사 파워플러스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나. 변경 시행일 : 2015년 1월 5일 (월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45조(집합 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中 소규모펀드 해지에 관한 사항)	<p>①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, 투자신탁의 합병,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, 투자신탁의 존속 등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u>2014년 8월 18일</u>	<u>2015년 1월 5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구에 관한 사항 中 '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'	연혁 신설	<u><신설></u>	<p>- <u>채권운용 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차상용 → 권용범)</u></p> <p>-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中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)</u></p>
제2부. 집합투자구에 관한 사항 中 '5. 운용전문인력에	채권운용 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<u>차상용</u>	<u>권용범</u>

관한 사항'			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中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', "나.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"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中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)	<p>①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 - <u>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</p> <p>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, 투자신탁의 합병,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,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u>2014년 8월 18일</u>	<u>2015년 1월 5일</u>
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中 '5. 운용전문인력'	채권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<u>차상용</u>	<u>권용범</u>